



- (1) 연말 연시 또는 주요 국제행사 등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일정 구역을 정하여 건축물 벽면 등을 이용한 조명 또는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
- (2)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선정 및 운영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의 규정을 준용함

자. 시 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(안 제4조 및 제30조)

- (1) 시 도지사가 시 군 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
- 일정 기간 동안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시 도지사가 직접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

- (2) 시 도지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 군 구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

차. 광고물 수거보상제 지급 근거 마련 (안 제32조)

- (1) 시 군 구에서는 금지 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해오는 자에게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에 따른 비용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

카.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(안 제27조, 제29조 및 제31조)

- (1)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 신설
- (2) 옥외광고물이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어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고나 통지를 거치지 않고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

### 3. 의견제출

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spa.go.kr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 주소 : 110-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1312호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

(전화 02-2100-3816, 팩스 02-2100-1749, 이메일: kwonym@korea.kr)

[▶ 의견제시](#)   [▶ 목록](#)